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동아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9155

발의연월일: 2025. 3. 20.

발 의 자:김동아·김문수·허성무

박균택 · 김영호 · 서삼석

한준호 • 이병진 • 임호선

홍기원 · 김남근 · 추미애

오세희 • 전현희 • 정을호

문정복 • 박정현 의원

(179]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법원이 부정경쟁행위나 영업비밀 침해로 인해 영업상 이익이 침해된 경우, 손해액 산정에 필요한 자료 제출을 명할 수 있도록하고 있음. 그러나 자료를 보유한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이를 거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피해기업이 손해액을 입증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임.

특히, 손해액 산정이 소송의 핵심 요소임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의자료 제출 거부로 인해 피해기업이 필요한 증거를 확보하지 못하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16 년 「특허법」 및 「실용신안법」 등에서도 영업비밀이라 하더라도 침해 사실의 입증이나 손해액 산정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는 자료 제출 의무를 부과하는 규정을 마련한 바 있음.

이에 손해액 산정 및 침해 사실의 입증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자료에 대해서는 자료 제출 거부를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지 않도록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제출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법원이 해당 자료의 기재 내용을 사실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자료제출명령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피해기업이 보다 효과적으로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4조의3 등).

법률 제 호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3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법원은 자료의 소지자가 제1항에 따른 제출을 거부할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그 주장의 당부를 판단하기 위하여자료의 제시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은 그 자료를 다른 사람이 보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 제1항에 따라 제출되어야 할 자료가 영업비밀에 해당하나 침해의 증명 또는 손해액의 산정에 반드시 필요한 때에는 제1항 단서에따른 정당한 이유로 보지 아니한다. 이 경우 법원은 제출명령의 목적 내에서 열람할 수 있는 범위 또는 열람할 수 있는 사람을 지정하여야 한다.
- ④ 법원은 제1항에 따른 제출명령을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그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자료의 기재에 대한 신청인의 주장 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인이 자료의 기재를 구체적으로 주장하기에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 있고 그 자료로 증명

하려는 사실을 다른 증거로 증명하는 것을 기대하기도 어려운 때에는 신청인이 자료의 기재로 증명하려는 사실에 관한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제14조의4제1항제1호 중 "준비서면 또는"을 "준비서면,"으로, "증거"를 "증거, 제14조의3제3항에 따라 제출하였거나 제출하여야 할 자료"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자료의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소가 제기되는 소송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4조의3(자료의 제출) (생 략)	제14조의3(자료의 제출) <u>①</u>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u><신 설></u>	② 법원은 자료의 소지자가 제1
	항에 따른 제출을 거부할 정당
	한 이유가 있다고 주장하는 경
	우에는 그 주장의 당부를 판단
	하기 위하여 자료의 제시를 명
	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은 그
	자료를 다른 사람이 보게 하여
	<u>서는 아니 된다.</u>
<u><신 설></u>	③ 제1항에 따라 제출되어야 할
	자료가 영업비밀에 해당하나 침
	해의 증명 또는 손해액의 산정
	에 반드시 필요한 때에는 제1항
	단서에 따른 정당한 이유로 보
	지 아니한다. 이 경우 법원은 제
	출명령의 목적 내에서 열람할
	수 있는 범위 또는 열람할 수
	있는 사람을 지정하여야 한다.
<u><신 설></u>	④ 법원은 제1항에 따른 제출명
	령을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 없
	이 그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
	우 자료의 기재에 대한 신청인
	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

제14조의4(비밀유지명령) ① 법원 은 부정경쟁행위, 제3조의2제1 항이나 제2항을 위반한 행위 또 는 영업비밀 침해행위로 인한 영업상 이익의 침해에 관한 소 송에서 그 당사자가 보유한 영 업비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유를 모두 소명한 경우에는 그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결정 으로 다른 당사자(법인인 경우 에는 그 대표자), 당사자를 위하 여 소송을 대리하는 자, 그 밖에 해당 소송으로 인하여 영업비밀 을 알게 된 자에게 그 영업비밀 을 해당 소송의 계속적인 수행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그 영업비밀에 관계된 이 항에 따

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인이
자료의 기재를 구체적으로 주장
하기에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
있고 그 자료로 증명하려는 사
실을 다른 증거로 증명하는 것
을 기대하기도 어려운 때에는
신청인이 자료의 기재로 증명하
려는 사실에 관한 주장을 진실
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베14조의4(비밀유지명령) ①

른 명령을 받은 자 외의 자에게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명할 수 있다. 다만, 그 신청 시점까지 다른 당사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 당사자를 위하여 소송을 대리하는 자, 그 밖에 해당소송으로 인하여 영업비밀을 알게 된 자가 제1호에 규정된 준비서면의 열람이나 증거 조사외의 방법으로 그 영업비밀을이미 취득하고 있는 경우에는그러하지 아니하다.

- 1. 이미 제출하였거나 제출하여 야 할 준비서면 또는 이미 조사하였거나 조사하여야 할 증 거 또는 제14조의7에 따라 송부된 조사기록에 영업비밀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
- 2. (생략)
- ② ~ ⑤ (생 략)

1
<u>준비서면,</u>
<u>중</u>
거, 제14조의3제3항에 따라 제
출하였거나 제출하여야 할 자
<u> </u>
2. (현행과 같음)
② ~ ⑤ (현행과 같음)